

(주)한글과컴퓨터

불법 소프트웨어 방지 활동 안내

당사에서는 한미 FTA 이후 정부의 SW진흥정책으로 SW저작권보호 활동 강화에 따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방지 및 정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계도를 위해 ‘한컴 정품 소프트웨어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W의 올바른 사용 안내 및 불법사용 SW에 대한 컨설팅”을 드리고자 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발 행 인 : (주)한글과컴퓨터

■수 입 인 : 한컴 정품 소프트웨어 컨설팅 파트너 / (주)한플러스커뮤니케이션

■담 당 자 : 이은별

■연 락 처 : 02-446-0291 / eblee@hanplus.net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방지활동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힘입어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품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소홀 및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과컴퓨터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컴 정품 소프트웨어 컨설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내지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용 권한의 획득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사용이 지속되어 왔다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소프트웨어 현황 파악등 귀 사업장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및 사용 안내를 위해 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를 **정품 소프트웨어 컨설팅 파트너**에게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하오며, 한글과컴퓨터가 공급하는 한글 및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들에 대한 컨설팅과 더불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공급해 드림으로써, 귀사의 사업에 보다 나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컴 정품 소프트웨어 컨설팅 프로그램의 활동은 한글과컴퓨터 공인파트너사인 (주)한플러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컨설팅 파트너의 활동 및 인원에 대한 확인, 그리고 공급 제품의 정품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은 아래와 같이 한글과컴퓨터를 통해 문의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사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한글과컴퓨터로 보유 및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등록해 주시기 바라오며,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한 ‘정품 소프트웨어 컨설팅 파트너’에게 연락을 주시어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사용 대해 안내 및 상담을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요청 드리며 점검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 팩스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별첨’ 자료에 자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 후 회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한글과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컨설팅 파트너 / (주)한플러스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이 은 별 전화 : 02-446-0291

- 아 래 -

1.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 점검 요청

가. 귀사의 컴퓨터에 한글 또는 한컴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

나. 설치 및 사용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품여부 확인

다. 소프트웨어 무료 점검 서비스(참고사항)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SW검색 프로그램 Click을 통한 점검

URL : www.spc.or.kr/html/consulting/sw_search_click.asp

2) 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점검 프로그램 Inspector를 통한 점검

URL : www.copy112.or.kr/itsam/inspection/download/standalone.do

3) Click 및 Inspector를 통한 검색된 결과는 PC에 설치된 SW목록을 나타내며 그것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알려 주지는 못합니다.

2. 팩스 회신 사항

가. 상기 자체 점검 사항에 대한 결과 ‘별첨’자료에 관련 내용 기입 후 아래 팩스로 회신

나. 팩스 회신은 본 안내서를 받으신 후 3일 이내 회신하여야 함

다. 회신용 팩스 번호 : **031-627-7705**

3. 기타 사항

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사용 허락된 수만큼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해야 함

나. 소프트웨어는 사용 허락된 대상기관에 맞게 설치 사용해야 함

다. 소프트웨어는 1PC에 1라이선스만 설치하여 사용해야 함

라.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사용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 따라서 설치된 불법 복제품을 임의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바. 당사의 라이선스 정책은 컴퓨터 1대에 1copy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량만큼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저작권법(제101조 3항)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라이선스 취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한글과컴퓨터 뷰어 사용권 안내

한글과컴퓨터 뷰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사용권의 오인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글과컴퓨터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한컴오피스 2014VP 뷰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하고자 할 경우

(2) “한컴오피스 2014VP 뷰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

(3) “한컴오피스 2014VP 뷰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할 경우

소프트웨어 자가 점검 결과 현황

※귀사의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현황에 대한 자가 점검 결과 입력란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 점검 실시 후 관련 결과 내용을 아래 해당 사항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 요망. 수량에 차이가 확인될 경우 귀사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①기업 개요

기 관 명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직 책		직원수	명	PC수	대
담당전화		팩스번호		메일주소			

②소프트웨어 점검 현황

제품명	설치&사용 수량	정품보유 수량	부족 수량	비 고
계				

※컴퓨터에 (㉸)한글과컴퓨터 제품군들의 설치(사용)된 수량과 정품 보유된 수량 입력 후 부족 수량을 표기

※정품 구매의 경우 아래 ③제품번호 입력란에 제품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품S/W는 사용권증서 및 주문확인서등의 사본을 아래 회신용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③정품 소프트웨어 제품번호 입력란 -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 입력하여 주세요

한글과컴퓨터 제품명	수량	제품번호 (CD Key)	구매/설치 일자

※입력하신 제품명과 제품번호의 사용권 증서 및 주문확인서의 사본을 팩스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소프트웨어 점검 결과

아래 해당 사항에 'V'표로 체크하시고 세부 내용은 '비고'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결과내용1	점검 결과 설치 및 사용 수량 모두 정품 소프트웨어로 확인 되었습니다.	체크
비고		
결과내용2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중이나 일부 수량이 부족하여 정품 구매 예정입니다.	체크
비고		
결과내용3	한글과컴퓨터사 제품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구매 계획은 없으며 향후 구매 예정.	체크
비고		
결과내용4	한컴 제품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구매할 의사가 없습니다.	체크
비고		
결과내용5	한글과컴퓨터사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크
비고		
결과내용6	점검결과와 상관없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 하고 싶습니다.	체크
비고		
결과내용7	소프트웨어 자가 점검 및 S/W 사용현황에 대한 회신을 거부 하겠습니다.	체크
비고		
결과내용8	상기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아래 비고에 내용을 입력하여 주세요.	체크
비고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작성자 _____ (사인)

⑤ 구매 계획

제품명	구매 수량	비고
한/글 제품		
한컴오피스 제품		

당 사는 위와 같이 필요(부족)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구입하겠습니다.

안내장을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꼭 아래 팩스 번호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회신 번호 : 031-627-7705

(주)한글과컴퓨터 프로모션 안내

(주)한글과컴퓨터는 ‘불법소프트웨어 방지 활동’과 더불어 귀사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 하였습니다.

아래 프로모션은 ‘정품 소프트웨어 컨설팅 파트너’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며 본 안내장을 받으신 사업장에서만 신청 가능 합니다.

부디 금번 프로모션을 통하여 특별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 받으시고 귀사의 사업장에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제품 : 한컴오피스 2014 VP Open License (종교기관용)
2. 진행 기간 : 2015년 11월 01일 ~ 2015년 12월 30일까지
3. 공급 가격

[Vat 별도]

제품명	정상단가	할인공급가	할인율	비고
한컴오피스 2014 VP Open License (종교기관용)	335,000	109,000원	67%	영구라이선스 양수양도불가

※최소 2copy부터 구매 가능

※구매 고객 대상 ‘이지포토 3 VP’ 1년 임시라이선스 제공

※양수양도 불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조성 Best FAQ-

※ 다음 FAQ는 수년 동안 전국의 기업에서 질의된 정품S/W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불법 프로그램 단속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곳이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동산사무실, 병의원 등 소규모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단속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우리 사무실의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양벌규정에 의하여 불법SW를 설치하여 사용한 직원은 물론이고 업무상 사용한 경우 대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 질 수 있으며, 제품구매 금액과는 별도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3. 우리 사무실이 최근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당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조립컴퓨터 구매 당시 설치된 후로 사용하고 있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하드웨어 조립 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OEM 또는 번들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불법사용에 해당되며, 타 불법사용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4.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함께 들어온(OEM or 번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하드웨어)는 이미 폐기처분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OEM 또는 번들로 들어온 SW는 컴퓨터 부품의 개념이므로 해당 하드웨어와 수명을 같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컴퓨터에서의 사용은 불법적인 사용입니다.

5.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 할 한글 소프트웨어 구매 시 COEM(DSP) 소프트웨어를 구매해도 되나요?

A. COEM 제품은 '새로운PC'와 함께(동시에) 구매할 때만 구입/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음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야합니다. 이전에 사용하시고 계셨던 컴퓨터에 COEM 제품을 별도로 구매한다면 공급받은 업체나 공급한 업체 두 곳 모두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부장님이 집에서 쓰시던 개인용 PC(노트북 포함)를 사무실에서 쓰시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개인 컴퓨터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도 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A. 단속의 기준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무 공간 및 사업장에 대하여 행해지므로 사무실에서 사용했다면 개인용 PC(노트북)라고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용 노트북이라 할지라도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합니다.

7. 현재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고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는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에 해당되나요? 만약 불법 복제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삭제해야 하나요?

A.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사용은 사용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해도 불법 복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치된 불법 복제품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 복제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8. 한글과컴퓨터는 가격이 저렴한 Home Edition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Home Edition제품은 ‘가정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따라서 업무공간에서 Home Edition 제품 사용은 불법적인 사용입니다.

9. 한/글 제품을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정품 패키지를 분실하였습니다. 이 경우 설치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법복제로 간주 되나요?

A. 만약 정품을 구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또는 고객등록 등)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정품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불법 복제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정품을 구매한 후에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시고, 고객 등록을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10. 한/글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어떠한 법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이를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